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기금운용관)①~③(생략) ④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u>사회산업과장</u> , 분임출납공무원은 구의 <u>사회계장</u> 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①~③(현행과 같음) ④..... <u>사회복지과장</u> ,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3.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사회과장

나. 내 용

○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안 제3조제3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 음

나. 찬성토론 : 없 음

5. 수정안 내용 : 없 음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8
의 결	95. 3. 28
년 월 일	(제36회)

제출년월일 : 95. 3. 17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구 직제개편으로 사회산업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이 사회계장으로 직제개편되었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개정(안 제3조제3항)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을 “사회계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피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②(생략)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②(현행과같음)			
③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u>사회산업과장</u> , 분임기금 출납공무원을 구의 <u>의료보장계장</u> 으로 한다.	③..... <u>사회복지과장</u> ,..... <u>사회계장</u>			

부천시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3. 17

다. 상정일자 : 95. 3. 24

라. 의결일자 : 95. 3. 24

2. 제안설명요지